

충청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11. 26

나. 회부일자 : '97. 11. 26

3. 제안이유

-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
-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작성 고시된(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 지침)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함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동조례 모법인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